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이언주 · 김병주 · 이광희
안도걸 · 한준호 · 김우영
홍기원 · 임미애 · 김한규
허성무 · 이건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관,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,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「공직자윤리법」상 퇴직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,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

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
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).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 본문 중 “1년부터”를 “2년부터”로, “1년 동안”을 “2년 동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수임제한) ① · ② (생략) ③ 법관, 검사, 장기복무 군법무관,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(재판연구원, 사범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·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)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(이하 “<u>공직퇴임변호사</u>”라 한다)는 퇴직 전 <u>1년부터</u>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, 검찰청, 군사법원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(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「검찰청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,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,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)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<u>1년 동안</u> 수임할 수 없다. 다만, 국선변호 등	제31조(수임제한) ① · ② (<u>현재와 같음</u>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2년부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2년 동안</u>----- -----.

공익목적의 수입과 사건당사자가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· ⑤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